

의안번호	2219106
의 퇴 인	김주영 의원
회 답 일	2026. 7. 3.
추 계 번호	26F272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7년 4,202억원, 2029년 5,709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조 4,809억원(연평균 4,93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66조 제4항)	-4,202	-4,898	-5,709	-14,809	-4,93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6조 제4항 (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)	-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6조 제4항 (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국토교통부의 「자동차등록통계」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참고하여, 향후 전기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하고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다음 가정에 따라 향후 전기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
 - (전기자동차) 2025년 신규등록 건수(22.1만대)를 기준으로, '23~'25년 연평균 증가율(16.6%)에 따라 향후 신규 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수준을 고려할 때,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은 한도(140만원)를 적용받을 것을 전제하여 세수효과를 추계
 - 전기자동차 감면액 한도(140만원)를 역산할 경우, 차량가액은 2,000만원 수준(취득세율 7% 적용 시)
 - * 자동차 취득세율: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%(경자동차 4%), 그 밖의 자동차 2~5%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최대 140만원 공제
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한도 및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화
 - ('12~16년) 전기자동차 140만원 → ('17~18년)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200만원 → ('19~24년)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140만원 → ('25년 이후) 전기자동차 140만원
 - * 2024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수소자동차는 동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- (감면실적)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1년 1,512억원에서 2022년 2,502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2,407억원으로 소폭 감소

- 2024년 12월 31일 동법 개정에 따라 수소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제5항으로 이동하였으므로 2024년까지의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수소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실적을 포함하고 있음

[표 2]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
감면실적	1,512	2,502	2,483	2,407

주: 2024년까지의 제66조 제4항의 취득세 감면실적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감면실적의 합계임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

(2) 추계방법

- (전기자동차 취득대수 전망) 국토교통부의 「자동차등록통계」의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의 신규취득 대수 및 감면 대상 수를 전망
 - 전기자동차는 2025년 신규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(2023~2025년) 연평균 증감률(16.6%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

[표 3]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건수: 2023~2025년

(단위: 대)

	2023	2024	2025	최근 3년('23~'25년) 연평균 증가율
전기자동차	162,605	146,902	220,919	16.6%

자료: 국토교통부, 「자동차등록통계」

[표 4] 전기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: 2026~2029년

(단위: 대)

	2026	2027	2028	2029
전기자동차	257,503	300,146	349,850	407,78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) 전기자동차 신규취득 전망치에 감면액 한도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

- 전기자동차의 일반적인 가격을 고려 시, 취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에 대해 한도액까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
 - 전기자동차 감면액 한도(140만원)를 역산할 경우, 차량가액은 2,000만원 수준

[표 5]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

(단위: 대, 억원)

		2027	2028	2029
전기자동차	감면대상(A)	300,146	349,850	407,785
	감면액(A×140만원)	4,202	4,898	5,70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7년 4,202억원, 2029년 5,709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조 4,809억원(연평균 4,93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66조 제4항)	-4,202	-4,898	-5,709	-14,809	-4,936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